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34호

「화장품 표시·광고를 위한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2호, 2020. 2. 25.)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
2024년 7월 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화장품 표시·광고를 위한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

화장품 표시·광고를 위한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2호)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